

#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유만희,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 
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 
문 성 호 의원입니다.
  
- 이렇게 선배·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  
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 
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 
을 드립니다.
  
- 그럼, 「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
조례안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용없는 저성장, 소득 양극화 심화 등 전례없는 경제 불안과 더불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발생으로 사회 안전망이 붕괴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적·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.

□ 또한 주민생활안정제도 지원기준 설정 시 실질적인 소득이 낮은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공시가격 변동률, 물가상승률 등도 함께 고려되도록 하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, 서울형 긴급복지, 서울안심소득 대상자도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, 이는 곧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에 있어 반석이 됩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